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습계좌를 통한 검정고시 면제과목에 국어·영어·수학 포함 〉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87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학습계좌를 통한 검정고시 면제과목에 국어·영어·수학 포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정헌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6. 29.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학습계좌제도를 통하여 검정고시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학습계좌제도는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을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을 고려한다면, 검정고시의 시험 면제 과목에 있어 중장년 학습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어려운 국어·영어·수학을 면제 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검정고시와 더불어 학습계좌를 통한 이수를 학력인정 시험의 범위에 규정하고,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전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학습계좌를 통한 검정고시 면제과목에 국어·영어·수학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습계좌 이수를 학력 인정의 범위에 추가하여 규정하고, 학습계좌를 통한 검정고시 면제과목에 국어·영어·수학 또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 -----합 격하거나 「평생교육법」 제23조제1 항에 따른 학습계좌(이하 “학습계 좌”라 한다)를 이수하여-----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의 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학습계좌를 통하여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중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

②·③ (생 략)

④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43조(입학자격 등)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생 략)

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② (생 략)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47조(입학자격 등)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다)을 면제한다.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⑥ _____

_____ 합격하
거나 학습계좌를 통하여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의 합격증명·성적증명 또는 이수증명 _____

⑦ ~~제6항에~~ _____

제43조(입학자격 등) ① _____

_____ 합격
하거나 학습계좌를 통하여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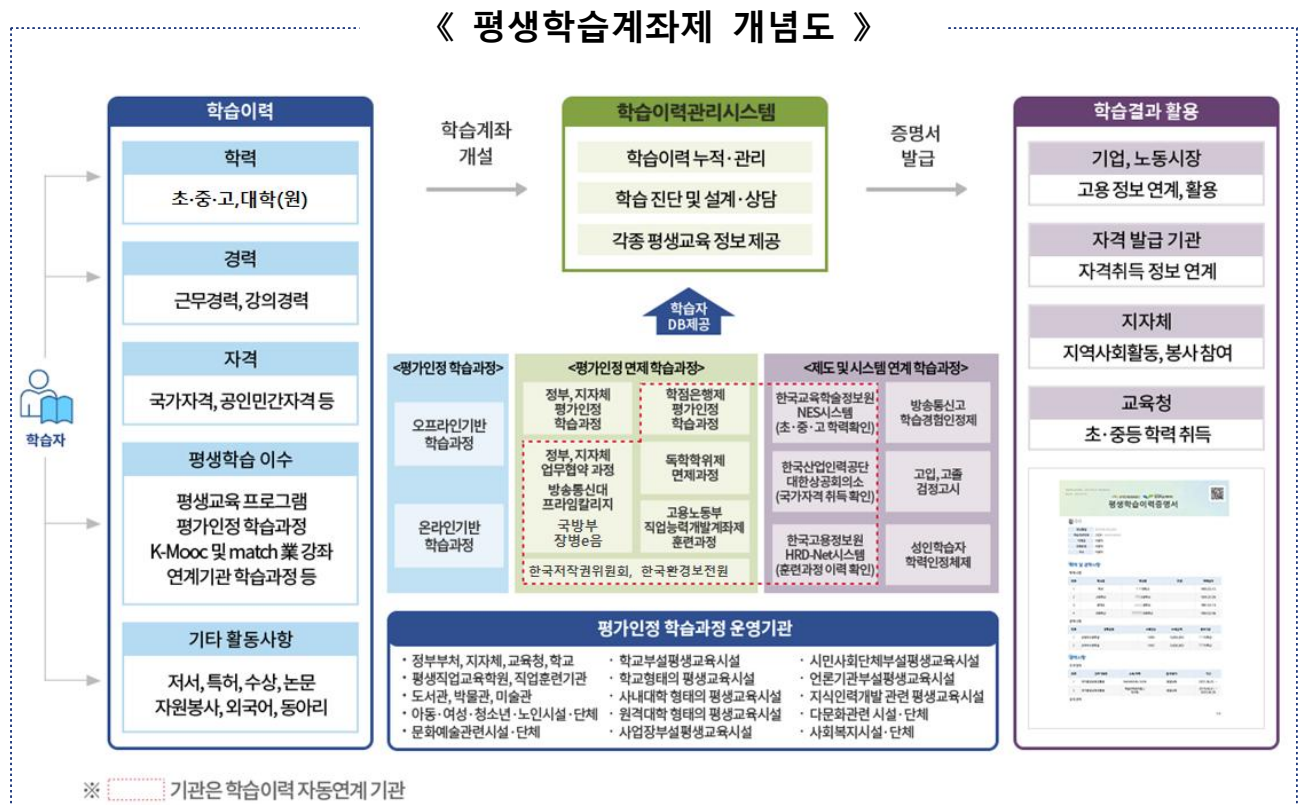
_____ 합격하거나
학습계좌를 통하여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_____

제47조(입학자격 등) ① _____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u>합격한</u>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생 략)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② (생 략)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u>합격한</u>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⑤ (생 략)	_____ _____ ~~합격하~~ <u>거나 학습계좌를 통하여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u> _____ 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_____ <u>합격하거나 학습계좌를 통하여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u> _____ -----. ④·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평생학습계좌는 평가인정¹⁾ 학습과정 이수, 자격, 경력, 자원봉사 등 국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개인별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평생학습이력증명서로 발급받아 학력취득, 취업자료 등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학습과정은 교육기관별 여건에 따라 온·오프라인 형태로 다양하게 개설·운영되고 있음.



자료: 교육부

- 한편, 검정고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여 초·중·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²⁾,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은 평생학습계좌를

1)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교육시설 및 설비, 교수과정, 교원·강사,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계 등 기준을 심사하여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으로 인정해주는 것임

통해 관리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검정고시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만 1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해당 과목의 검정고시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음³⁾.

검정고시 면제 대상이 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려는 교육기관은 해당 과목에 대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을 받아야 하고⁴⁾⁵⁾, 해당 학습과정을 이수하려는 학습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도율을 달성하고 자체평가를 거쳐 이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초졸검정고시의 경우 국어·수학 과목, 중졸 및 고졸검정고시

2)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시험과목의 면제) ①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초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의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수학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2항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3항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기술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2. 3년제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과목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5. 고등기술학교등의 최종학년 재학 중 또는 3년제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 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 후 3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 과목

4) 2026년 기준 평생학습계좌제 연계 검정고시 과목 면제 학습과정은 총 96개 과정이 개설·운영되고 있음.

5)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업무 위탁)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관리·운영 업무, 영 제14조의2에 따른 평가인정을 위한 학습과정의 평가 업무를 진흥원장에게 위탁한다

의 경우 국어·수학·영어 과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제도를 통한 과목 면제자는 중졸 검정고시 28명, 고졸 검정고시 62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검정고시 시행 결과>

(단위: 명, %)

구 분	초졸			중졸			고졸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23	4,456	4,129	92.66	10,737	9,256	86.21	40,188	33,831	84.18
2024	4,526	4,206	92.93	10,579	9,126	86.27	43,203	35,513	82.20
2025	4,370	4,060	92.91	11,522	9,817	85.20	47,316	39,013	82.45

자료: 교육부

< 2025년 검정고시 과목 면제 현황 >

(단위 : 명)

종류	과목 면제자	필수과목 면제자					선택과목 면제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
중졸	28	0	0	0	27	28	26	0	0	0	0	0
고졸	과목 면제자	필수과목 면제자					선택과목 면제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62	14	20	15	47	58	52	39	3	4	0	2

※ 고졸 검정고시에서 국어·수학·영어 과목의 면제자가 존재하는 것은,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가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수학 또는 영어 과목만 응시하여 학력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임.

자료: 교육부

- ☐ 개정안은 평생학습계좌의 학습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을 명시하고, 현행 검정고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국어·수학·영어를 면제 과목에 새로이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에게 검정고시 응시 외에 평생학습계좌 학습과정 이수를 통한 학력 인정을 확대함으로써 학력 취득 방식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임.

또한, 오랜 학습 공백으로 인해 기초 교과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학습자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국어·영어·수학 과목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시험 준비에 필요한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줄여 초·중·고졸 학력 취득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국어·수학·영어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사실상 전 과목 면제를 가능토록 하고 있는바, 학력 인정의 실질적 기준이 약화될 수 있음. 검정고시는 시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성취 수준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학력을 공인하는 제도인 반면, 학습계좌 이수는 학습에 투입한 시간 및 자체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학습자가 해당 교과 내용을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이해·습득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또한, 상급 학교 진학 후 학습 결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국어·수학·영어는 상급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기초 역량의 핵심 과목으로, 해당 과목에 성취 수준에 대한 평가 없이 학력을

취득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 해당 학습자가 이후 교육 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갖추었는지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한편,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⁶⁾는 정규 공교육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계좌를 통한 과목 면제 대상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연령 제한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과정에서 누락하고 있어, 학령기 학생들이 대입 우회 수단이나 조기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정규 교육 체계를 이탈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학력 취득의 기회를 놓친 고령 학습자의 학력 취득 선택지를 넓히고 학력 취득의 부담을 감경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검정고시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습과정 이수만으로 학력을 인정함에 따른 학력 검증의 객관성 문제 및 타 학력인정 경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력인정 확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6)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시험과목의 면제) ①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초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의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수학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2항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3항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한편, 고령 학습자 지원이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확보하면서 학령기 학생의 공교육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국어·수학·영어의 경우 학습 이수 기준 시간을 확대하고, 자체평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정안의 입법화를 위해서는 학습계좌제를 활용하여 검정고시 합격과 동등한 학력 인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세심한 제도 설계와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연령 제한이 없어 학령기 학생이 학습계좌를 활용해 조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업을 중단하는 등 제도 취지와 다르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부 시·도교육청은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경우 객관적 시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한 기초교과이므로 전면 면제가 학력인정의 공신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중장년층의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생학습을 통해 학습한 경험을 학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학습계좌제 이수만으로 학력을 인정하거나 검정고시 응시 과목 전체를 면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습계좌제는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는 제도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습한 경험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음
- 다만, 각 학습 과정에 대한 이수 판정이 학습 시간 및 기관의 자율적 평가에 기반하고 있어, 학습계좌제의 학습경험만으로 학습자가 각 학교급의 학력에 상응하는 성취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간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연령 제한이 없어 학령기 학생이 학습계좌를 활용해 조기 상급학교 진학을 위

해 학업을 중단하는 등 제도 취지와 다른 활용 가능성이 있음 - 아울러 방송통신중·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기존 제도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학습계좌에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타 제도 위축 우려가 있음
○ 시·도교육청 (전남, 전북) 신중검토 - 개정안은 중장년층 지원 취지에도 불구하고, 10대의 대입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어 공교육 이탈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국어·영어·수학은 객관적 시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한 기초교과로, 전면 면제는 학력인정의 공신력을 저해할 수 있음 -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등에는 일부 과목만 면제하는 반면, 학습계좌 이수자에게 전과목 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도 있으나, 기준 설정의 어려움과 역차별 우려가 있음 (울산) 일부수정 - 학습계좌를 통한 학력인정 제도를 전면 도입시 공교육 운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적용 대상을 만 4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로 한정할 필요 (대구) 일부수정 - 중장년 학습자에 실효적인 학력취득 기회 제공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학력인정 시험과 구분하여 학습계좌 이수를 통한 학력인정 제도 별도 규정 필요

문 의 처
02)6788-5184